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1,450,000	15,943,500
일반회계	470,300,000	14,109,000
특별회계	61,150,000	1,834,500
공기업특별회계	37,850,000	1,135,500
수도사업특별회계	14,950,000	448,5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900,000	687,000
기타특별회계	23,300,000	69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700,000	11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00,000	84,0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600,000	18,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00,000	42,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00,000	69,000
치수사업특별회계	10,400,000	312,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00	15,0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300,000	39,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